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0.08.20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선임급

소속 : 에너지신사업관리실

[상담 내용]

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관련하여 사기업의 비상임이사 기록도 제출해야되나요?

[상담 결과]

-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 2(고위공직자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) 1항에 따라 직위 임용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간 분야 활동 내역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.
- 또한, 동일 법 2항에 따라 제출 내용에는 재직하였던 법인/단체와 그 업무 내용, 관리/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, 그 밖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.
- 사기업의 비상임이사 기록 또한 제출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.

[확 인] 2020.08.20

홍보팀장 홍은영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0.09.03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책임급

소속 : 디지털융합실

[상담 내용]

서면자문 관련하여 외부강의등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

[상담 결과]

- 청탁금지법 제10조(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) 1항 및 2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/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/홍보/토론회/세미나/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/강연/기고 등은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.
- 그러나,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매뉴얼(2020,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)에 따르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/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이라 적시되어 있습니다.
- 서면자문의 형태를 파악하시어 외부강의등 해당여부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.

[확 인] 2020.09.03

홍보팀장 홍은영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0.10.13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선임급

소속 : 전기계측기술실(원)

[상담 내용]

외부강의등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?

[상담 결과]

- 청탁금지법 제10조(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) 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그러나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재확인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.

[확 인] 2020.10.13

홍보팀장 홍은영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0.11.26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책임급

소속 : 화력O&M사업그룹

[상담 내용]

하도급사에서 수주 기념으로 팀에 기념품을 선물하고자 한다고 합니다.
수령해도 되나요?

[상담 결과]

- 청탁금지법 제8조(금품등의 수수금지) 제2항에서 “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된다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/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혹은 동일 조항 7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
- 이에, 수령 거부 및 수령 시 반납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.

[확 인] 2020.11.26

홍보팀장 홍은영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0.12.16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○○○

직급 : 선임급

소속 : 원전안전센터

[상담 내용]

회사 차량을 이용해 외부강의등을 참석 예정인데,
외부강의등 주최 측에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. 지급 받아도 되나요?

[상담 결과]

- 청탁금지법 제10조(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)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또한,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(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) 관련하여 2. 적용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별로 실비 수준으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교통비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회사 차량을 이용해 외부강의등을 참가함에도 주최 측에 교통비를 지급받는 행위는 이중 지급으로써 불가하며,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[확 인] 2020.12.16

홍보팀장 홍은영